

대구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가단1188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

피 고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이 판결 확정일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신용보증기금은 A의 채권자이고,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써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이며, 피고는 A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람이다.

나. 신용보증기금의 A에 대한 채권 발생

1) A은 2019. 3.경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원금 1억 2,75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9. 3. 13.부터 2020. 3. 12.(이후 2020. 7. 31.까지로 변경되었다)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A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위 기금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그 밖에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2)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9. 3. 1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20. 5. 14. 운영하던 사업체(E)를 폐업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6. 1. D에 128,842,19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적절차비용 703,761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등

A은 2020. 2. 5.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20. 2. 5. 접수 제2299호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A에 대한 파산선고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개시 등

1) A은 2020. 5. 18. 대구지방법원 2020하단857, 2020하면85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3. 4. A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고 원고를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D의 신청으로 2020. 6.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21. 9. 15.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실제 배당할 금액	1,220,714,495원		
채권자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	G 유한회사	주식회사 C
채권금액	2,834,240원	1,165,289,529원	150,000,000원
배당순위	1	2	3
이유	당해세	신청채권자의 승계인(근저당권)	근저당권자
배당액	2,834,240원	1,165,289,529원	52,590,726원

3) 원고는 2021. 7. 26. 대구지방법원 2021카단1595호로 피고의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21. 7. 2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1. 8.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9,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용보증기금은 2020. 6.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에 128,842,198원을 대위변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적절차비용 703,761원을 지출함으로써 A에 대하여 129,545,959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점, ② 위 구상금 채권은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위 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인 2019. 3.경 체결되어 있었던 것인 점, ③ A은 E를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왔는데 2019. 5.경부터 유류대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기 시작하였고 2020. 1. 31.경에는 미지급한 유류대금이 1억 원을 초과하였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4. 16. 및 2020. 4. 28.에는 A 소유 부동산이 채권자들에 의하여 가압류되는 등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체결 이전부터 A의 자금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0. 5. 14. A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터 잡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이 가까운 장래인 2020. 6. 1. D에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구상금 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5,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A은 2020. 5. 18. 대구지방법원 2020하단857호, 2020하면85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그 무렵 시가 약 1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합계 1,280,732,424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반면,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D,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및 피고에 대하여 합계 1,547,469,575원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총 재산으로 총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파산 및 면책신청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의 재산상태도 위 파산 및 면책신청시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결국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인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시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3)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이고 A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의 채무초과 상태 및 사해의사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로서의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한편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가람

별지1

목 록

1. 경북 칠곡군 N	창고용지	27㎡
2. 경북 칠곡군 O	답	89㎡
3. 경북 칠곡군 P	창고용지	45㎡
4. 경북 칠곡군 Q	전	71㎡
5. 경북 칠곡군 R	창고용지	741㎡
6. 경북 칠곡군 S	잡종지	1234㎡
7. 경북 칠곡군 T	잡종지	1289㎡
8. 경북 칠곡군 S, T		
[도로명주소] 경북 칠곡군 U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사무소)		127.16㎡
주유소(케노파)		60.72㎡
9. 칠곡군 V	전	45㎡, 끝.

별지2

목 록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F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202 . 9. 5.자 배당기일에 배당받은
배당금 52,590,726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 끝.

1)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무 중 피고에 대한 채무를 뺀 합계 1,410,398,067원(원고의 2021. 11. 8.자 준비서면 참조)에 피고에 대한 채무 137,071,508원을 더한 금액이다.